

2025년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 공고

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관련하여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8일

(재)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공공 연구개발 성과(지적재산권)의 이전을 활성화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도모
- 신청기간: 공고일 ~ 2025년 4월 30일(수), 16:00까지
- 지원대상: 25년도에 *공공기술 이전(도입) 계약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인천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중소기업
 - * 공공기술: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 기술
 - * 기술이전 계약서상의 계약년도가 2025년이어야 하며, 금년내 계약체결,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
- 지원내용: 이전기술 권리행사를 위한 정액 기술료 50% 이내 (2,500천원 한도)

2. 주요내용

- 지원분야(기술도입 구분)

지원분야	내 용
산업재산권 이전	-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, 사용, 양도, 판매,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
노하우 이전	-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
전용·통상 실시권	- 산업재산권 소유자가 실시자에 산업재산, 노하우의 실시권을 허여

- 지원목표 : 8개사(8건, 기업당 1건)
- 지원내역 : 상기 해당분야 권리행사를 위해 계약한 정액 기술료 일부
 - 정액 기술료의 50% 이내 (2,500천원 한도)
- 사업비 지급
 - 지원금은 도입기업의 기술료(공급가액 기준) 납부 확인 후 지급
 -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기술료 납부시 지원

3. 선정 방법

- 심사방식: 서면심사
 -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, 타당성, 기술성, 시장성 등 항목에 따라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선정
- 심사항목: 이전기술 수준(20), 이전타당성(50), 사업화 가능성(20), 비용타당성(10), 가산점
 - ※ 가산점내용
 -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 가산점(6점) 부여
 - 인천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아래 대상에 가산점(4점) 부여
[중복해당시 최대 우대가점 4점 부여함]

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
-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운영사업 수혜기업(최근3년이내)
- 인천시 우수기업(유망, 비전, 중견성장사다리)
- 인천시 일자리창출우수인증기업
-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(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)

- 선정제외 대상
 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(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) 및 휴·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
 -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-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 -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

4.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를 필히 점검하여야 함.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,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
-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부적합 사유 발생시 선정취소,
지원금 지급 연기 또는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명령함
- 동일 기술, 동일 내용으로 우리기관, 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
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금 환수 등 조치함

5. 모집기간 및 제출처

- 모집기간: 공고일 ~ 4월 30일(수) 16:00까지
- 제출처: 담당부서 이메일(ghkang@itp.or.kr) 제출
- 담당부서 및 제출처(문의처)
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032-260-0617

6.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비고
1	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 신청서	붙임1 서식
2	사업계획서	붙임2 서식
3	사업자등록증 사본	붙임3 서식
4	청렴계약 이행각서	붙임4 서식
5	개인정보처리 동의서	붙임5 서식
6	기술이전 계약서 사본(별지)기술이전 계약 요약서(기술이전 예정 경우)	붙임6 서식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* 유효기간 확인
8	가산점 항목 증명서	해당시 각 1부